

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검토보고서

2020. 6. 24.

행정재무위원회
전문위원 임경오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·출연을 통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및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1) 주요변경 내용

- 2020년 기금지출계획 중 예치금 감액과 출자금 및 출연금 증액
(단위: 천 원)

1991년(기금설치) ~ 2019년 출자 및 출연 현황	2020년 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용			비 고
	지출항목	증 액	감 액	
○ 출자 없음 ○ 2004, 2009, 2011, 2013년(각 1억 씩 총 4억 원 출연)	출 자 금	500,000	-	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
	출 연 금	400,000	-	기금 용자 지원을 위한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
	예 치 금	-	900,000	

※ 예치금: 회계연도 말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

2) 변경사유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근거한 투자조합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을 위한 기금 일부 출연

3) 수입·지출 계획 변경(안)

(단위: 천 원)

수입				지출			
항목	당초	변경	증감	항목	당초	변경	증감
합계	11,429,674	11,429,674	-	합계	11,429,674	11,429,674	-
전입금	2,200,000	2,200,000	-	용자금	8,500,000	8,500,000	-
용자금 회수	5,663,152	5,663,152	-	이차보전금	300,000	300,000	-
공공예금 이자	46,000	46,000	-	운용위원회 수당	2,000	2,000	-
용자금 회수 이자	196,240	196,240	-	출연금	0	400,000	400,000
예치금 회수	3,317,344	3,317,344	-	출자금	0	500,000	500,000
예탁금 이자	6,938	6,938	-	지역경제 혁신센터 운영비	210,500	210,500	-
				예치금	2,417,174	1,517,174	△900,000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(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제5항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제1항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
변경 예산은 총 9억 원이며, 예치금 24억 1,717만 원 중 9억 원을 감액하여 출자 및 출연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,
 - 출자금 5억 원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소셜벤처 및 창업 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
 - 출연금 4억 원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용자를 위해 보증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다만,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사업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